

# 용역 계약서

메가존아이티평생교육원(이하 "교육원"이라 한다)과 수업진행 교·강사 장현희(이하 "교·강사"라 한다)는(은) 다음과 같이 수업진행 교·강사 계약을 체결하고,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.

## **제 1 조 [목 적]**

본 계약은 "교육원"이 지정한 해당 업무를 "교·강사"에게 위임함에 있어 "교육원"과 "교·강사"의 권리,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.

## **제 2 조 [계약의 범위]**

1. "교·강사"의 업무는 계약 전 해당 업무를 토대로 "교육원"과 "교·강사"가 계약된 내용으로 한다.
2. "교·강사"에게 위임하는 과목은 "교육원"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등록하여 "교·강사"가 해당 과목의 담당 교·강사로 등록(지정)된 과목으로 한다.
3. 위임하는 과목의 상세 운영 기간 및 수강생 정보는 운영 기수 수강일 전에 "교육원"이 "교·강사"에게 안내하도록 한다.
4. 학습 과목별 학습관리시스템(LMS: Learning Management System)에 주차별 1회 이상 접속해야 한다.
5. 과목 수강일로부터 2주 내 학습관리시스템(LMS: Learning Management System)을 통해 학습자에게 개강 인사 및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해야 한다.
6. 시험 및 과제, 토론 등 학습자에 대한 교육서비스(채점 및 첨삭)를 "교육원"이 정한 일정 내에 완료해야 한다.
7. 보충 학습 자료는 운영 기수 당 5회 이상 제공하며, 해당 기수 개설 3일전까지 "교육원" 담당자에게 전달하거나 사이트 자료실에 등록 후 "교육원" 담당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.
8. 학습자의 질의에 대해 토, 일 공휴일을 제외한 24시간 이내에 답변을 제공해야 한다. 단, 장기출장 등 즉각적인 답변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가 발생 시 사전에 "교육원"의 담당자에게 연락방안을 항상 준비해 두어야 한다.
9. 매 학기 정기고사 결과에 따른 정답률 확인 후, 필요 시 문제난이도를 조정하여 지속적으로 문제은행 풀 관리를 한다.

## **제 3 조 [계약 기간]**

1. 본 계약기간 :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- 2 계약기간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"교육원"과 "교·강사"의 상호협의를 통하여 계약 기간은 변경할 수 있다.

## **제 4 조 [대금 지급]**

1. 수업진행 교·강사는 최대 200명까지 수강생을 담당할 수 있으며, 수강생 1인당 10,000원을 지급한다. 또한 주당 총18시수(단 실습이 포함된 일부 과목의 경우 총 24시수)를 초과할 수 없다.
2. 평가문제를 갱신할 경우 지급기준은 정기고사(중간고사, 기말고사)에 대한 문제, 정답 및 해설제공 서술형 및 단답형의 문제일 경우 모범답안 및 채점기준 제공)는 문제 당 2,500원, 과제(문제, 채점기준, 모범답안 제공), 토론(문제, 채점기준, 모범답안 제공)은 문제 당 5,000원을 지급한다.
3. 지급일은 위임된 과목의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보고일 기준, 익월로 하며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그 전일로 한다. 단, "교육원"의 사정상 지급일은 조정될 수 있다.
4. 교·강사에게 지급되는 대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(3.3%)를 원천징수한 금액으로

지급한다.

#### **제 5 조 [준수 의무]**

"교육원"과 "교·강사"는 신의를 가지고 이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, 부과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#### **제 6 조 [비밀 유지의무]**

"교육원"과 "교·강사"는 본 계약의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획득한 모든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며, 본 계약상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. 비밀유지 의무는 계약기간 및 계약해지 후에도 존속된다. 단, 본 계약의 이행을 위해 "교육원"의 합의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. 만약 이의 위반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.

#### **제 7 조 [검수]**

1. 정기고사(중간고사, 기말고사), 과제, 토론 등 문제 개발 및 감수방법과 검수회수는 반드시 "교육원"이 별도 제시한 일정, 검수방법, 검수인력, 검수회수에 따르기로 한다.
2. 각 단계별 "교육원"의 검수기간은 "교·강사"가 검수를 요청한 날로부터 1주일을 넘길 수 없으며, "교육원"이 "교·강사"의 검수요청 이후 1주일 이내에 검수결과 및 수정요청사항을 "교·강사"에게 통보하지 않을 시에는 각 단계의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.
3. 평가문제를 개선할 경우 개발교·강사가 감수를 통해 이후 "교육원"이 "교·강사"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청할 시, "교·강사"는 "교육원"이 요청한 날로부터 반드시 1주일 이내에 수정 및 보완의 구체적인 이행사항을 "교육원"에게 서면 제출하여야 한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정 및 보완사항이 "교육원"의 요청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시에는 동조동항의 방법을 반복하기로 한다.

#### **제 8 조 [계약 종료]**

1. 본 계약은 "교·강사"의 계약 기간 동안 유효하며, 단 계약 종료시점에 해당 과목의 학사일정이 진행 중일 경우 해당과목의 평가인정 유효기간 까지를 종료일로 하며, "교육원"과 "교·강사"의 쌍방 서면 합의에 의해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.
2. 계약기간 만료 후,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동일 내용으로 자동 연장되며, 종료시점은 1항에 따른다.

#### **제 9 조 [계약 해지]**

"교육원"은 "교·강사"가 다음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전 통보하고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제5조 준수의무 및 제6조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
2. "교·강사"가 질병이나 그밖에 이유로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3. 학력, 경력 등 계약 시에 구두 또는 문서로 제시한 내용에 대해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
4. 연락이 두절되거나, 불성실한 첨삭을 하는 등 학습과목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

#### **제 10 조 [손해 배상]**

"교·강사"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해지 후 "교육원"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"교육원"은 "교·강사"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#### **제 11 조 [기타]**

1. 본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관계 법령에 따르며,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- "교육원"과 "교·강사"는 본 계약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며, 본 계약서에 날인한 후 "교육원"과 "교·강사"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- 본 계약은 "교육원"과 "교·강사"간의 서명날인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.

2025년 12월 24일

(교육원) 주 소 :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85길 46 12층

기관명 : 메가존아이티평생교육원(메가존)

기관장 : 메 가 존 아 이 티 평 생 교 육 원 장



(교·강사) 주 소 : 서울시 강동구 구천면로 42길 95-10

연락처 : 010-8744-3334

성 명 : 정 대희 정 대희 성명 또는 인)